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을 제외한 6개의 각 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며, 인천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전산직 신규직원 교육 및 정보화 업무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개발지원팀을 신설하며,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 및 국세통계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실무 중심의 회계학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증원하였던 인력 1명(7급 1명)을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6급 6명)을 각각 감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세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

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의 정원 중 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4명, 9급 1명)으로,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명 3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의 정원 4명(5급 4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01명(5급 31명, 6급 35명, 7급 35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차량 운행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는 한편, 국제조세관리관실 및 징세법무국 내 일부 하부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세청 정원 1명(8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0명(5급 10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0명(6급 6명, 7급 4명)을 각각 상호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13.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3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호 중 “빅데이터 및 정보분석”을 “빅데이터”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 및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조세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4. 국제조세관련 서면 질의·회신

5.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6. 디지털세에 관한 업무

제4조의3제3항제7호(종전의 제4호) 중 “담당관 및 팀”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을 “역외 정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2.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 수집·분석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제4조의3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 협력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제6조제2항 중 “징세과·법무과·법령해석과”를 “징세과·법무과·법규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해석과장”을 “법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7.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제9조의2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제1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 및 전산관리팀을 두되, 각”을 “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산사무관”을 “전산사무관으로, 개발지원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 및 전산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전산관리팀 및 개발지원팀을 둔다.

⑧ 개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분석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기초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업무

제31조제1항 단서 중 “25명”을 “26명”으로, “세무주사 5명”을 “세무주사 9명”으로, “세무주사보 6명”을 “세무주사보 3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을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09명(6급 50명, 7급 2명, 8급 57명)”을 “104명(6급 44명, 7급 3명, 8급 5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61명”을 “69명”으로, “51명”을 “59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세무주사보 “158”을 “159”로 하고, 세무서기 “32”를 “31”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19”를 “920”으로 하고, 일반직계 “915”를 “916”으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를 “4”로 하고, 서기관 “31”을 “32”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3”을 “29”로 하고, 행정사무관 “122”를 “126”으로 하며, 세무주사 “239”를 “243”으로 하고, 세무주사보 “164”를 “162”로 하며, 세무서기 “32”를 “31”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사무관 “13”을 “3”으로 하고, 세무주사 “15”를 “21”로 하며, 세무주사보 “8”을 “12”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사무관 “15”를 “4”로 하고, 세무주사 “16”을 “23”으로 하며, 세무주사보 “8”을 “12”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사무관 “1,014”를 “1,024”로 하고, 세무주사 “4,341”을 “4,335”로 하며, 세무주사보 “4,550”을 “4,545”로 하고, 세무서기 “5,414”를 “5,415”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20,580”을 “20,575”로 하고, 일반직계 “20,580”을 “2

0,575”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6”을 “15”로 하고, 서기관 “180”을 “181”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7”을 “64”로 하고, 행정사무관 “1,052”를 “1,065”로 하며, 세무주사 “4,385”를 “4,373”으로 하고, 세무주사보 “4,552”를 “4,548”로 하며, 세무서기 “5,436”을 “5,437”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보호팀장, 상호합의팀”을 “정보보호팀장”으로,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상호합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상호합의담당관”을 “정보화기획담당관”으로, “개인납세1과장”을 “인천지방국세청을 제외한 각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한다.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 및 전산관리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납세1과장”을 “부가가치세과장”으로 하며, 같은 부칙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및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 공포일

2. 제6조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4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개발지원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개발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개발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1명(세무주사 14명, 세무서기 57명)은 각각 2022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및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1명(세무주사보 1명)을 포함한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및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5명(세무주사 5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운전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산정보관리관) ① ~ ② (생략)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7. (생략) 8. <u>우편물자동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u> 9. · 10. (생략)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4. (생략) 5. <u>빅데이터 및 정보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u> ⑤ ~ ⑧ (생략)	제3조(전산정보관리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 10.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u>빅데이터</u>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생략)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u>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u> 및 상호합의담당관 각 1명을 두되, <u>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u>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u> ----- ----- <u>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u>

당관 및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호합의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및 국제협력담당관----- ----- ----- ---. ③ 국제조세담당관----- -----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4. 국제조세관련 서면 질의·회신 5.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6. 디지털세에 관한 업무 7. ----- 담당관---- ----- --- ④ 역외정보담당관-----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신 설> <신 설> 6. 국제조세관련 서면 질의·회신 7.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1.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 -----. 1.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2.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 수집·분석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삭 제> <삭 제> ⑤ 국제협력담당관----- ----- -----.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	---	---	--

2.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 수집·분석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 지휘·감독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삭 제>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징세법무국) ① (생 략)	제6조(징세법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징세법무국에 <u>징세과·법무과·법령해석과</u> 및 <u>세정홍보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징세과·법무과·법규과</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신 설>	7. <u>과세기준에 관한 자문</u>
⑤ <u>법령해석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u>법규과장</u>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과세기준에 관한 자문</u>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소득지원국)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소득지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려세제신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특수직 종사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u>	<삭 제>
5. <u>일용근로소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u>	<삭 제>
<신 설>	6. <u>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기획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교육기획과)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u>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u>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수과)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u>	<삭 제>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생 략)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u>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u>

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 -----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2명-----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9명(6급 50명, 7급 2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1명(5급 9명, 6급 51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04명(6급 44명, 7급 3명, 8급 57명)-----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69명----- 59명----- -----.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상호합의팀은 2018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고, 정보보호팀 및 전산관리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 및 전산관리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보호팀장, 상호합의팀 및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상호합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상호합의담당관이,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개인납세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 정보보호팀장 ----- ----- ----- ----- 정보화기획담당관----- ----- ----- 인천지방국세청을 제외한 각 지방국세청 부가치세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개정령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 ----- <u>2023년 12월 31일</u> ----- -----.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은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23년 12월 31일</u>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	② ----- ----- ----- ----- -----

난 날부터 인천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u>개인납세1과</u> 장이 분장한다.	----- ----- ----- <u>부가가치세과장</u> ----- -----.
제4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u>2023년 12월 31일</u> ----- -----.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u>중전의 기획재정부령 제64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5명(전산사무관 5명)을 제외한 정원 2명(세무주사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1명(세무주사 14명, 세무서기 57명)은 각각 2022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한다.</u>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u><삭 제></u>

②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9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별표 6의2의 세무주사 3명 및 세무주사보 1명, 별표 7의2의 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6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및 세무주사보 1명, 별표 7의2의 행정사무관 1명 및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16명은 각각 2022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별표10의2의 정원 101명(행정사무관 31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4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1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 ----- ----- ----- ----- ----- ----- ----- 20 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 ----- ----- ----- -----.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36호 국세청과 그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2023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주사보	<u>158</u>	<u>159</u>	+1
•	•	•	
•	•	•	
세무서기	<u>32</u>	<u>31</u>	-1
•	•	•	
•	•	•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19</u>	<u>920</u>	+1
·	·	·	
·	·	·	
일반직 계	<u>915</u>	<u>916</u>	+1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5</u>	<u>4</u>	-1
·	·	·	
서기관	<u>31</u>	<u>32</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3</u>	<u>29</u>	-4
·	·	·	
행정사무관	<u>122</u>	<u>126</u>	+4
·	·	·	
·	·	·	
세무주사	<u>239</u>	<u>243</u>	+4
·	·	·	
·	·	·	
세무주사보	<u>164</u>	<u>162</u>	-2

·	·	·	
·	·	·	
세무서기	<u>32</u>	<u>31</u>	-1
·	·	·	
·	·	·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13</u>	<u>3</u>	-10
•	•	•	
세무주사	<u>15</u>	<u>21</u>	+6
•	•	•	
세무주사보	<u>8</u>	<u>12</u>	+4
•	•	•	
•	•	•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15</u>	<u>4</u>	-11
•	•	•	
세무주사	<u>16</u>	<u>23</u>	+7
•	•	•	
세무주사보	<u>8</u>	<u>12</u>	+4
•	•	•	
•	•	•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1,014</u>	<u>1,024</u>	+10
•	•	•	
•	•	•	
세무주사	<u>4,341</u>	<u>4,335</u>	-6
•	•	•	
•	•	•	
세무주사보	<u>4,550</u>	<u>4,545</u>	-5
•	•	•	
•	•	•	
세무서기	<u>5,414</u>	<u>5,415</u>	+1
•	•	•	
•	•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580</u>	<u>20,575</u>	-5
일반직 계	<u>20,580</u>	<u>20,575</u>	-5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16</u>	<u>15</u>	-1
서기관	<u>180</u>	<u>181</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67</u>	<u>64</u>	-3
행정사무관	<u>1,052</u>	<u>1,065</u>	+13
•	•	•	
•	•	•	
세무주사	<u>4,385</u>	<u>4,373</u>	-12
•	•	•	
•	•	•	
세무주사보	<u>4,552</u>	<u>4,548</u>	-4
•	•	•	
•	•	•	
세무서기	<u>5,436</u>	<u>5,437</u>	+1
•	•	•	

.	.	.	
---	---	---	--